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37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박수민·김선교·박성민

이헌승 · 서지영 · 김소희

임종득 • 이인선 • 김미애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 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 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 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
	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
	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
	<u>액에서 공제한다.</u>